

사단 법인 한국 부식 학회 규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: (목적)

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부식학회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회 원

제 2 조 : (입회)

본 학회의 정(학생)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에 입회금 및 당해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3 조 : (회비)

각종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.

1. 입회비 ₩1,000

2. 회비(년액)

1) 정회원 ₩4,000

2) 학생회원 ₩2,000

3) 단체회원 ₩20,000이상

4) 특별회원 ₩200,000이상

단,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.

3. 종신회원

당해년도 정회원 년회비 10년분을 일시 납입하는 회원은 회비를 종신토록 면제 한다.

제 4 조 : (기납 금품의 불반환)

회원은 일단 납입한 입회금, 회비 및 기타재산의 반환을 요구 할수 없다.

제 5 조 : (권리, 의무)

회원은 규칙 제3조에 정한 회비를 매사업년도 1/4 분기 이내에(정, 학생회원은 3/4분기이내) 납입하여야 하며, 회원의 연락 주소지의 변경시 반드시 본회에 통보함으로서 정관 및 제반 규정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.

제 6 조 : (자격의 정지)

회비를 체납한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 한다.

상기의 사유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가 체납 회비를 납부할 때에는, 회장의 승인을 거쳐 재입

회를 승인할 수 있다.

제 7 조 : (명예 회원의 추천)

정관 제10조 5 항에 정하는 명예회원은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며,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/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결정 한다.

명예 회장 및 고문의 선출도 이에 준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 8 조 : (임원의 명칭 및 정수)

임원의 직무별 명칭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. (정관 15인 이내) 1978. 6. 11 제 4 차 이사회에서 개정

- | | |
|---------|-----|
| 1. 총무이사 | 1 인 |
| 2. 재무이사 | 3 인 |
| 3. 사업이사 | 3 인 |
| 4. 기술이사 | 3 인 |
| 5. 편집이사 | 3 인 |
| 6. 감 사 | 2 인 |

제 9 조 : (임원의 선출)

임원(이사 및 감사)의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임원후보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 제출한다.
2. 임원은 이사회가 제출한 후보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은 선출 된다.

제 10 조 : (선거, 피선거권)

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부여 된다.

제 4 장 회 무

제 11 조 : (회무의 분장)

본회의 회무는 다음과 같이 이사가 분장 수행한다.

1. 총무이사 : 인사, 문서, 기타 서무일반에 관한 업무
2. 재무이사 : 예산, 결산, 금전의 출납, 재산의 관리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업무.
3. 사업이사 : 학술 발표회, 세미나, 강습회, 견학회, 좌담회 등 행사의 기획 및 개최에 관한 업무.
4. 기술이사 : 조사, 연구, 교육 및 대외 용역에 관한 업무.
5. 편집이사 : 회지 및 기타간행물의 편수 발간에 관한 업무.

한 업무.

제12조 : (사무국)

본회는 원활한 회무 수행과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.

1.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2. 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3.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4. 사무국 정원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5 장 이 사 회

제14조 : (이사회의 개최)

이사회는 2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하며 회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수시 소집 할 수 있다.

제15조 : (결석 이사의 출석)

이사회에 결석하는 이사는 출석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전술 할 수 있다. 이때는 출석으로 인정한다.

제 6 장 위 원 회

제16조 : (위원회의 설치)

1. 회장은 회무 수행상 필요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.
2. 위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하며 설치 위원회의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.

제17조 : (위원회의 직무)

설치 위원회는 매회기마다 또는 그 임무 종료시 사업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7 장 지부 및 분회

제18조 : (지부 설치)

정회원 30인 이상인 지역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.

단, 학생회원 2인을 정회원 1인으로 간주 한다.

제19조 : (지부 임원)

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지부장 1인
2. 부지부장 1인
3. 지부이사 약간명
4. 감사 1인

제20조 : (임원선출)

지부 임원은 지부 규칙에 따라 정회원 중에서 선출

하고 지부장은 지부의 추천을 거쳐 본회 회장이 임명 한다.

제21조 : (임원임기)

지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22조 : (의무)

1. 지부는 본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, 이행하여야 한다.
2. 지부가 본회의 사업 또는 명예에 관련된 대의 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3조 : (회무보고)

지부는 매사업년도 예산, 결산 및 회무보고서(회원명단, 회비납부현황)를 정기총회 2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4조 : (경비의 보조)

본회는 지부 회원이 납부한 회비의 1/3을 수부 경비로 보조한다.

제25조 : (규칙의 제정)

본 규칙에 규정한 사항외에 지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부 규칙으로 정한다. 단, 지부규칙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6조 : (분회의 설치)

동일한 직장 또는 단체에 속하는 정회원 5명 이상으로 분회를 둘 수 있다. 단 학생회원 2명은 정회원 1명으로 간주 한다.

제27조 : (분회장)

분회에는 분회장 1인을 두며 회장 또는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.

분회장은 매년 1월 소속회원명단을 본회 사무국 또는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회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8 장 회 지

제28조 : (회지간행)

본회는 년 4회이상 “한국부식학회지”를 발간한다.

제29조 : (배부)

1. 회지는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. 단 비회원으로서 구독을 희망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제공 할 수 있다.
2.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9 조 포상 및 장려

제30조 : (포상)

1.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본회의 학

회상으로 표상한다.

- 1) 부식 및 방식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개발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 또는 단체
- 2)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 또는 단체

제31조 : (연구비 지급)

1. 부식, 방식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 연구를 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.

2. 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10장 부 칙

제32조 : (규정제정)

본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33조 : (시행일자)

본 규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